



환 경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의 사업장 외부 보관 기준 안내

1. 환경보전을 위한 귀 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일선 시?도 및 시?군?구에서 순환골재의 건설폐기물 해당 여부와 순환골재의 보관?관리 기준 등에 대한 해석을 환경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1920호)」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이 아니며, 다만 사업장 외부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바닥면, 지붕, 벽면을 갖춘 보관시설에서 보관해야 함' 을 알려드립니다.
4. 시?도 및 시?군?구 등 인허가기관에서는 사업장 외부에 순환골재를 보관중인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순환골재를 사업장 내부로 옮겨 보관하거나, 바닥면, 벽면, 지붕 등을 갖춘 외부보관시설 설치계획을 제출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인허가기관에서는 외부보관시설 설치계획을 제출한 중간처리업체에 대해서는 건설관련 인허가기간,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외부보관시설 설치시까지 유예기간(1년 이내)을 부여하여 동 행정사항이 혼란없이 적용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환 경 부 장 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생활환경과장), 부산광역시(자원순환과장), 대구광역시(자원순환과장), 인천광역시(자원순환과장), 광주광역시(자원순환과장), 대전광역시(자원순환과장), 울산광역시(자원순환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자원순환과장), 경기도지사(자원순환과장), 강원도지사(환경과장), 충청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환경안전관리과장), 전라북도지사(환경보전과장),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물환경과장), 경상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환경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생활환경과장), 대한건설협회, 사단법인 한국건설환경협회, 한국건설자원협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무관	이병훈	환경사무관	문세흠	과장	전완	전결 2022. 02. 24.
협조자						
시행	폐자원관리과-728	(2022. 02. 25.)	접수	M00003929686	(2022. 2. 25.)	
우 1507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자연순환국 폐자원관리과				/ http://me.go.kr	
전화번호	044-201-7375	팩스번호	044-201-7376	/ gangjjang88@me.go.kr	/ 대국민공개	